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8월 31일

나. 발 의 자 : 권영식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9.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제8조)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9조~제12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추진(안 제13조~제21조)

❍ 기후변화영향 조사 실시(안 제23조)

❍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촉진(안 제25~제26조)

❍ 기금의 설치, 재정지원 등(안 제27조~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제)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추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29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으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영등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 안 제7조~제8조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12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심의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제21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 사용자제,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구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영향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25조~제2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구민 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 안 제27조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2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

발의년월일 : 2018년 8 월 일
발 의 자 : 권영식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제8조)

마.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9조~제12조)

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추진(안 제13조~제21조)

-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확충, 자동차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사. 기후변화영향 조사 실시(안 제23조)

아.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안 제25~제26조)

자. 기금의 설치, 재정지원 등(안 제27조~제2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

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변화 대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대응 활동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1. “승용차요일제”란 구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 미운행일을 지정하여 이를 이행하는 구민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확대 등

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제4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는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① 구는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9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후변화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제고 및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 구는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

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자동차운전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승용차요일제 등 참여)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행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구는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시책 및 재정지원 등

제22조(기후변화 적응대책)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기후변화영향 조사) 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 상황과 구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① 구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구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구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재정지원 등)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국내·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6.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